

대전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가단2157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1. B

2. C

3. D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9.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E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9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6/900 지분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3. 3. 21. 접수 제365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피고 D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말소를 구하는 피고 C와 피고 D의 지분을 각 97/900로 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들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그 차액분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 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제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상속지분을 두고 굳이 당사자 간에 협의가 없을 경우 등에 적용되는 2차적이고 부수적이며 획일적인 법정상속지분에 근거해 사해행위 취소를 할 이유가 달리 없다. 즉, 채무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의 환원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해당 지분을 협의 분할받은 각각의 비율만큼 안분하여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충분하다(이는 곧 가져간 만큼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고 공동상속인들의 각 법정상속지분에 맞춰 환원하게 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실제로 협의하여 분할받은 채무자의 지분보다 더 많거나 더 적은 지분을 환원할 수밖에 없고(이 경우 적어도 자신이 가져간 지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돌려주게 되는 공동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다고 여길 것이다.), 이것은 곧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 간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 정해지는 것인데, 단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만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의 자유마저 모두 봉쇄시킬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원고는 그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지분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적어질 경우 그들의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법정상속지분보다 적어진 지분을 갖게 된 공동상속인들이 그로 인해 실제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지 여부는 아무도 속단할 수 없다. 즉 이는 그들 사이의 별개의 문제이고, 만약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불거진다면 해당 공동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법정상속지분을 돌려받은 공동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단, 이때도 협의분할한 지분대로 안분하여 환원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C, 피고 D의 경우 원래의 협의분할한 지분대로 안분하여 환원한다면 각 66/900을 돌려주면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피고 B는 협의분할한 지분대로 하면 68/900이 되나, 처분권주의에 따라 청구한 대로 인용한다.).

판사 박우근

별지목록

1. [표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 304㎡
- 이 상 -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매입, 운용, 처분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외 F 주식회사가 소외 E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52848 대여금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 소외 E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승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이며, 소외 E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양수금 채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소갑 제1호증 지급명령정본 사본 참조)

한편 피고들은 소외 E와 소외 G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 상속에서 소외 E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2. 손해행위의 내용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는 소외 F 주식회사가 소외 E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5284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며, 소외 E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원금 8,090,624원 및 위 금원 중 7,559,946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에 의한 지연이자 및 독촉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손해행위인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 이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었습니다.

2) 사해행위의 내용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52848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정본을 근거로 소외 E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에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피상속인 망 G의 사망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됨으로 인해 소외 E에게 법정상속지분이 있음을 탐지하였으나 소외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이후 피고들과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3. 3. 21. 접수 제36541호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소갑 제2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참조).

원고는 위 채권을 양수받은 후 소외 E에게 수차례에 걸쳐 채무 변제를 독촉한 바 있으나, 소외 E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며 오히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들에게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소외 E 상속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타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

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E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우려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협의분할을 하고 이로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대한 부족이 생겨 원고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외 E의 사해의사는 명백하며 소외 E의 사해의사가 명백한 이상 소외 E의 형제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상속지분확정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원칙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E의 법정상속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3. 3. 21. 접수 제36541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소외 E의 정확한 상속지분을 특정하기 위한 피상속인 망 G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나 귀원의 보정명령이 없으면 위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원에서 망 G((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H)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과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정을 내려주시면 추후 피고들과 소외 E가 공동상속인임을 증명하고 법정상속지분도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결론

소의 E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중 소외 E의 법정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E의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3. 3. 21. 접수 제36541호로 등기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